

- * 원 제 : “Das Leben, ein Kunstwerk ohne Autor. Der Ausnahmezustand, die Verwaltung der Unordnung und das private Leben. Ein Gespräch mit Giorgio Agamben,” interview with Ulrich Raulff in the *Süddeutsche Zeitung*. April 6, 2004.
- * 영역본 : Interview with Giorgio Agamben — Life, A Work of Art Without an Author: The State of Exception, the Administration of Disorder and Private Life
- * 출처 : <http://www.sueddeutsche.de>
German Law Journal No. 5 (1 May 2004) (<http://www.germanlawjournal.com/article.php?id=437>)
- * 옮긴이 : sanggels@gmail.com

조르조 아감벤 인터뷰

— 삶, 저자 없는 예술 작품 : 예외상태, 무질서의 관리와 사적인 삶

* 『독일법저널』 편집자 주 : 2004년 3월 4일, 로마에서 올리히 라울프^{Ulrich Raulff}가 진행한 이 인터뷰는 애초 독일에서 2004년 4월 6일, 『남독일신문』(*Süddeutsche Zeitung*)에 수록되었다. 이 인터뷰의 번역본을 『독일법저널』 *German Law Journal*에 실는 것을 허락해 준 올리히 라울프와 조르조 아감벤에게 감사드린다. [영역본] 번역은 『독일법저널』의 공동 편집자인 Morag Goodwin(EUI, Florence)이 맡았다. 모든 각주는 편집자가 이번 출간을 위해 제공한 것이다.

* 옮긴이 주 : 아감벤과 라울프의 인터뷰가 어떤 언어로 진행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. 그렇지만 영역본을 토대로 초역을 한 후, 독일어 원판과 대조한 결과, 몇 가지 의심스런 바가 있어 독일어판을 기초로 전면 수정을 가했다. 그렇지만 때로는 독일어판과 영역판에서 적절한 어휘나 용어, 문장의 흐름을 취사선택한 경우가 많았다. 각주는 『독일법저널』의 편집부가 붙인 것이며, 각주 번호 옆에 *가 붙은 것은 옮긴이의 것이다.

라울프 : 최근 독일에서도 당신의 최신작 『예외상태』가 출판되었습니다.¹⁾ 이 책은 언뜻 보기에도 칼 슈미트와 연결되어 있는 개념에 관한 법제사적인 분석입니다. 당신의 “호모 사케르” 기획²⁾에서 이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?

아감벤 : 『예외상태』는 『호모 사케르』에서 시작된 일련의 계보학적 에세이의 일부이며, 이것은 또한 4부작 중 하나를 이를 예정입니다. 내용에 대해 말하자면, 이 책은 두 가지 논점을 다룹니다. 첫째는 그 역사적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. 즉, 예외상태^{Ausnahmezustand} 또는 긴급사태/비상사태^{Dringlichkeitszustand}가 오늘날 통치^{government}의 패러다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원래 통상적이지 않은 어떤 것^{etwas}

1) * Giorgio Agamben, *Stato di eccezione*, Torino : Bollati Boringhieri editore e.r.l., 2003.; *State of Exception*, trans., Kevin Attell, Chicago & London: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, 2005.
2) 예를 들어 Giorgio Agamben, *Homo Sacer: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* (Daniel Heller-Roazen trans.,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)[조르조 아감벤, 『호모 사케르: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』, 박진우 옮김, 새물결, 2008.]을 보라. 호모 사케르란 고대 로마법에 따르면, 희생제와의 제물이 될 수는 없으나, 그를 살해하더라도 누구든 그 살해자에게 살인죄를 묻지 않게 되는 그런 인간을 가리킨다. 아감벤은 이 개념을 우리 시대의 주요한 정치적 난점 — 나치즘에서 그 정점에 달했던 최악의 종류의 전체주의의 대두 — 을 독해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한다.

Außergerwöhliches/extraordinary 이 예외로 간주되었으나 [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유효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] 역사적 변천에 의해 예외는 통치^{governance}의 규범적인^{정상적인/정상적인} 형태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.³⁾ 저는 이 변천의 귀결이,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가 처한 상태에서 지닌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. 두 번째는 철학적인 성격을 띠는 것인데요, 법과 법의 부재^{무법},⁴⁾ 법과 아노미^{무법률상태}⁵⁾의 기묘한 관계를 다룹니다. 예외상태는 법과 법의 부재 사이에서 감추어져 있으나 근본적인 관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공허^{void}하고 텅 비어^{Leerstelle} 있지만, 바로 이 텅 빈 공간이야말로 법체계^{legal system}를 구성하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.

라울프 : 이미 당신은 “호모 사케르” 기획의 제1권^[호모 사케르]에서 예외상태의 패러다임이 강제수용소에 존재한다고, 혹은 수용소와 일치한다고 썼습니다.⁶⁾ 지난해 당신이 이 개념을 미국 정부, 미국 정치에 적용했을 때, 예상대로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거셨습니다. 당신의 비판이 여전히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?⁷⁾

아감벤 : 예외상태라는 개념의 그러한 [현대 미국정치에의] 적용에 관해 말하자면, 저는 [이미] 아우슈비츠에 관한 책⁸⁾에서 같은 비난⁹⁾을 제시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역사가가 아닙니다. 저는 패러다임을 좇아 연구합니다. 하나의 패러다임은 사례^{Beispiel}, 역사적으로 특이한 현상의 모범^{Exempel}과 같은 겁니다. 푸코의 경우 그것이 판옵티콘이었던¹⁰⁾ 제 경우에는 호모 사케르나 무젤만, 또는 예외상태였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패러다임을 방대한 양의 현상들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만, 또 다시 푸코와 비교해서 말하자면, 이것은 판옵티콘에서 ‘판옵티코니즘’이라는 고유한 사고방식을 발전시켰던 푸코와 유사하게 역사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.¹¹⁾ 이러한 방법에 의한 분석은, 그러나

3) * 영역판에서는 government와 governance가 번갈아 쓰이고 있는데, 내용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. 이는 독일어 원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. 독일어판에서는 regieren/Regierung가 쓰이고 있을 뿐이다. 그렇지만 오늘날 이 둘을 구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government는 ‘통치’로 옮겼고, governance는 ‘통치governance’로 표기해 두었다.

4) * 독일어판의 ‘Gesetzlosigkeit’를 영역판에서는 ‘lawlessness’로 옮기고 있는데, 이는 우선 ‘법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법-없음’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‘법의 부재’를 뜻한다. 그렇지만 이것은 동시에 ‘법에 준하지 않는다’를 뜻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. 따라서 이것은 outlaw, 즉 ‘법외피탈(법률상의 은전과 보호를 빼앗김)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. 어쨌든, 이 글에서나 『호모 사케르』에서나, ‘호모 사케르’는 lawless와 outlaw라는 뜻을 동시에 품고 있다고 하겠다.

5) * ‘아노미, anomy’는 보통 ‘법률이 없는 상태’를 가리키는데, 말할 것도 없이 이 ‘아노미’는 어원상 ‘a-nomos’, 즉 ‘법-이전/법-아님’을 의미하며(예를 들어 에밀 뒤르켐의 『사회분업론』과 칼 슈미트의 『대지의 노모스』를 대비하여 참조할 것), ‘법의 부재’와 동의어이다.(이 ‘a-nomos’는 ‘a-nomisma’, 즉 ‘화폐-이전/화폐-아님’과 대비하여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.)

6) * Giorgio Agamben, *Homo Sacer : le pouvoir souverain et la vie nue*, tr. par Marilène Raiola, Seuil, 1995, pp. 129 이하.

7) * 이것은 아감벤이 NYU의 초대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때, 지문과 얼굴사진을 찍는 새로운 입국통제에 반발하여 이에 항의하고, 강의를 취소한 사건을 가리킨다. 이 점에 관해서는 Giorgio Agamben, “Non au tatouage biopolitique,” *Le Monde*, 12 Janvier 2004 [http://www.philosophie.org/giorgio.html ; 영역판, “No to Bio-Political Tattooing”, http://www.ratical.org/ratville/CAH/totalControl.pdf]를 볼 것.

8) Giorgio Agamben, *Quel che resta di Auschwitz : l'archivio e il testimone: homo sacer III.* (『아우슈비츠의 남은 것』), Torino : Bollati Boringhieri, 1998. ; *Ce qui reste d'Auschwitz: l'archive et le temoin: Homo Sacer III.* trans., Pierre AlferiParis: Payot & Rivages, 1999. ; *Remnants of Auschwitz: The Witness and the Archive*, trans., Daniel Heller-Roazen, 1999.(Zone Books 2002 재간행).

9) * 영역판에서는 ‘remonstrance’라고 되어 있다. 이 말은 사전적으로는 ‘간언, 타이름, 충고’를 뜻한다. 독일어판에는 ‘Vorhaltungen’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것은 ‘문책하다, 비난하다, 책망하다’ 등을 뜻한다. 간언과 비난이라는 두 말의 틈을 생각할 때 이 용어는 상당히 흥미롭다.

10) 예를 들어 Michel Foucault, *The Foucault Reader* 217 (Pantheon 1984)을 보라. “벤담의 유토피아가 물질적 형태로 완전히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은 [오로지] 고해성사 제도에서였습니다. 1830년대에 판옵티콘은 대부분의 감옥 프로젝트의 건축적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. 그것은 ‘훈육의 지성’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방식이었습니다.” 판옵티콘은 여러 층으로 나뉜 건물들로 둘러싸인 채 중앙에 탑이 하나 있으며, 가운데에는 커다란 뜰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.

사회학적 연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.¹²⁾

라울프 : 그렇지만 사람들은 당신의 대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것이 미국의 정책과 나치의 정책을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.

아감벤 : 하지만 저는 오히려 관타나모 수감자들에 관해 말했습니다.¹³⁾ 그리고 이들이 처한 상황은 법적으로 말하더라도, 실로 나치의 강제수용소의 수감자들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. 관타나모의 억류자들^{detainees}은 전쟁포로의 지위도 갖고 있지 않으며, 그 어떤 법적^{legal} 지위도 갖고 전혀 있지 않습니다.¹⁴⁾ 이들은 그저 노골적인^{raw} 권력에 종속되어 있을 뿐입니다. 거기에서 그들은 어떠한 법적 존재도 아닙니다.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우선 국적을 완전히 박탈당했고,¹⁵⁾ 다음으로 뉘른베르크 법 후에도 남아 있었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게 되었으며,¹⁶⁾ [최종적으로는] 법적 주체로서도 또한 말소되어 버렸습니다.

라울프 : 미국의 치안정책¹⁷⁾과의 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? 관타나모의 사례는, 앞에서 당신이 서술했던, 법을 통한 통치^{governance}에서 질서의 부재에 대한 [행정적] 관리^{administration}를 통한 통치로의 이행이라는 틀에 속하는 문제일까요?

아감벤 : 이것은 운영-관리^{management}를 통한, 행정-관리^{verwaltung}를 통한 권력지배¹⁸⁾라는 모든 치안행위의 배후에 감춰져 있는 문제입니다. 1978년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에서¹⁹⁾ 미셸 푸코는 치안이 어떻게 18세기에 통치^{government}의 패러다임으로 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. 케네, 튀르그를 비롯한 기타 중농주의 정책가들에게 치안은 기아와 대파국을 방지하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그들에게 치안이란 기아와 대파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이윤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것이 귀결되도록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했던 것입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푸코는 통치모델로서 치안^{안전}, 훈육^{규율}, 법을 대립시킬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이 두 가지 요소 — 법과 법의 부재^{무법} — 와 이것들에 대응하는 통치^{governance}의 형식들 — 법을 통한 통치와 관리^{운영}를 통한 통치²⁰⁾ — 이

11) Id. at 212. "... 그리고, 근대사회의 보편적 법치주의^{juridicism}가 권력의 실행에 대해 한계를 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, 보편적으로 확산된 판옵티콘주의는, 광대한 동시에 세밀한 기계가 법의 이면^{underside}에서 작동하는 것을 가능케 했으며..."

12) * 조금은 당혹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이 말은, 잘 음미해 둘 필요가 있다. '사회학적 연구'와 혼동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이 말은 뒤르켐을 의식한 언급으로, 역사가든 철학자든 사회학자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.

13) * 그렇지만 《르몽드》에 게재된 그의 주장이 관타나모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. 위의 인터뷰 참조.

14) 2004년 4월 20일, 미국대법원은 관타나모 억류자들의 법적 지위와 사법적 접근[법적 접근^{judicial access}]을 결정하기 위한 소송에서 격론을 벌였다. 예를 들어 Rasul v. Bush, No. 03-334 (D.C. Cir filed 2 Sept. 2003), cert. granted 124 S.Ct. 534 (2003)를 보라.

15) * 원문은 denaturalisieren이 아니라 denationalisieren이며, 후자는 최근 들어 자주 사용되고 있다.

16) 1934년에 시행된 뉘른베르크 법^{The Nuremberg Laws}에서의 시민권에 관한 법을 포함한 나치의 「자유에 관한 당총회」는 "독일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 않은" 모든 사람들에게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^{박탈}했다. 이에 관해서는 Ingo Müller, *Hitler's Justice* 96-97 (Deborah Lucas Schneider trans.,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)을 참조.

17) * 영역판에서는 'Sicherheit'를 관례대로 'security'로 옮기고 있다. 보통 이를 '안전'이나 '안보'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, 푸코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록의 제목을 『안전, 영토, 인구』로 번역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. 그러나 'Sicherheit'나 'Sicherheitpolitik'는 '치안' 또는 '치안정책'으로 옮기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.

18) * 여기에서는 'Herrschaft'를 'Regierung'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'권력지배'로 옮겼다. 영역판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.

19) * 독일어판에서는 1978년이라고 되어 있으나, 영역판은 1968년이라고 되어 있다. 내용상 이것은 Michel Foucault, *Naissance de la biopolitique: Cours au Collège de France, 1978-1979*, Seuil, 2004를 가리키기에 전자가 올바르다.

20) * 독일어판에서는 'Herrschaftformen', 즉 '지배의 형태들'로 되어 있으나, 맥락상 영역판에서 표기한 'governance'가 올바르다.

하나의 이중구조 또는 하나의 체계의 일부를 이룬다는 점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저는 이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. 당신도 알다시피, 칼 슈미트가 자주 인용했던 프랑스의 격언이 있습니다.²¹⁾ *Le Roi reign mail il ne gouverne pas*(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)가 그것입니다.²²⁾ 이것이 이중구조 — 군림하다^{régner}와 통치하다^{gouverner} — 의 문턱들^{경계영역} *termini*입니다. 벤야민은 이 한 쌍의 범주에 이끌다.명령하다^{schalten}와 통치하다.관리하다 *walten*라는 한 쌍의 개념들을 끌어들이니다.²³⁾ 이러한 두 개의 역사적 분리-결합^{dissociation}를 이해하기 위해서는, 우선 맨 먼저 이러한 두 개의 구조적 상호관계를 짚 옮겨줘야만 합니다.

라울프 : 다시 묻겠습니다요, [정말로] 법^[에 의한 지배]의 시대는 끝났나요? 우리는 지금 인류의 사이버네틱스에 의한 규제와 순수한 관리에 의한 행정법규명령^(Schaltung)²⁴⁾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요?

아감벤 : 얼핏 보기에 행정^{관리}을 통한 통치, 운영-관리를 통한 통치가 실제로 우세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, 법에 의한 지배는 퇴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. 우리는 무법^{無法}을 운영-관리 또는 행정-관리에 의해 극복하는 시도의 성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.

라울프 :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법체계 전체의 확장과 법 규제의 끔찍한 증대 또한 목격하고 있지 않나요? 일상적으로 보다 많은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고, 예를 들어 독일인들은, 일상적으로는 베를린^{행정}보다는 카를스루에^{Karlsruhe}^[사법]에 의해 보다 강하게 통치되고 있다고 느낍니다.²⁵⁾

아감벤 : 당신도 알고 있듯이, 그러한 체계를 구성하는 두 요소들은 서로 공존하지만, 두 요소는 각각의 극단으로 수렴되게끔 내몰리게 되며, 또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둘은 최종적으로는 양극분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. 오늘날 우리는 아노미^{무법률상태}와 혼란^{무질서}의 극한이 어떻게 법제화^{legislation}와 완벽하게 공존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.

라울프 : 그러한 상태를 묘사한 당신의 방법에서 보면 저는, 지금까지 이상으로 보다 선명한 양극적 대립으로 나아가는 분열을 감지하게 됩니다. 그렇지만 당신은 다른 에세이에서, 정치적인 것의 고전적 영역이 보다 더 협소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.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다소 치명적이지만 쇠퇴하는 것처럼 들립니다.

아감벤 : 벤야민을 가지고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. 쇠퇴와 같은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. 말하자면 시대는 항상 이미 몰락하고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이죠. 당신이 공/사와 같은 정치적-철학적으로는 과거의

21) * 예를 들어, 칼 슈미트의 『정치신학』이나 『헌법론』을 보라. 슈미트는 『헌법론』에서 “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”를 인용한 후에, 이어서 “<통치하다gouverner>라는 것을 지우면 <군림하다régner>에 도대체 무엇이 남는가라며 독일의 위대한 헌법학자 막스 폰 제이텔이 제기했던 것에 대해, 힘(Macht/potestas)과 권위(Autorität/auctoritas)를 구별하여 정치적 힘에 대한 권위의 독자적 의미를 의식함으로써 대답할 수 있다”고 쓰고 있다.

22) * 용어에 관해 한 마디 하자. 이 프랑스의 격언을 독일어에서는 *Der König herrscht, aber er regiert nicht*라고 표기하고 있다.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간극(밑줄에 주의)이 일으키는 바에 주의할 것.

23) * 벤야민의 「폭력 비판을 위하여」를 볼 것. *schalten*은 어의상 전철(轉輸)에 의한 변환, 전환을 의미하며, 비유적으로는 ‘흐름에 저항하여 조작하다 혹은 이끌다’를 의미한다. 또한 *walten*은 보다 직접적으로 ‘관리지배하다, 통치하다’ 혹은 ‘뜻대로 조치하다, 우위에 있다’를 의미한다. 따라서 전자는 비유적 용어이며, 후자는 첫 번째 뜻으로 쓰였다. 따라서 *schalten und walten*처럼 이중구조가 접속하면, 그것은 ‘뜻대로 행동하다·처신하다’를 의미한다.

24) * 여기에서 계속 ‘행정법규명령’으로 옮긴 *Schaltung*은 영역판에서 *decree*로 표기되어 있다.

25) 카를스루에^{Karlsruhe}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^{Bundesverfassungsgericht(BVerfG)}와 독일연방대법원^{Bundesgerichtshof(BGH)}이 있는 곳이다. 카를스루에의 법적-정치적 의미에 관해서는 Gerhard Casper, *The “Karlsruhe Republic” - Keynote Address at the State Ceremony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*, 2 German Law Journal No. 18 (01 December 2001)을 보라(at <http://www.germanlawjournal.com/article.php?id=111>)

것이 되어 버린 고전적 구별을 채용하더라도, 저는 그러한 구분에 얽매어 이러한 두 항 중의 어느 하나가 소실되었다고 비판해하는 것에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합니다. 오히려 저는 둘의 뒤얽힘에 훨씬 흥미를 느낍니다.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이 체계가 어떻게 기능^{작동}하는가입니다. 그리고 문제는 이 체계가 늘 쌍극적이라는 것입니다. 즉, 이 체계는 늘 대립에 의해 작동합니다. 공과 사의 대립으로서가 아니라, 왕과 도시, 예외와 규칙, 군림과 통치 등으로서도 쌍극적인 것입니다. 그러나 여기에서의 진정한 관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원di-chotomies적이 아니라 ‘쌍극bi-polarities’적인 대립으로서,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긴장을 포함한 대립으로서 이해해야만 합니다. 두 개의 상이한 실체 사이에 명확한 분할선을 긋고, 분리할 수 없이, [양자]물리학에서의 그것과 유사하게, 영역을 지배하는 논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이러한 극성^{極性}은 이 영역 각각의 지점에 현전하며, 거기에서 작동합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은, 갑작스레 결정불가능성^{Ununterscheidbarkeit} 또는 무차별성^{indifference}의 영역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. 예외상태란 이러한 영역들 중 하나입니다.

라울프 : 사적인 것의 한계^{endpoint} —와 이것에 수반된 현실—가 당신의 체계적인 검토라는 의미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? 거기에는 방어해야만 할 무엇인가가 있을까요?

아감벤 : 우선 무엇보다 명백한 것은, 우리가 더 이상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차이를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고전적 대립에서의 양 측면들이 그 현실성을 계속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. 또한 관타나모의 억류시설이 이러한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바로 그 장소^{locus par excellence}라는 것입니다. 특히 예외상태는 이러한 구별의 무력화^{neutralization}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저는 이 개념이 여전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. 미국에서 프라이버시^{사적인 것}의 보호와 옹호에 전념하고, 또 이 영역 내부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을 정의하고자 하는 무수한 조직들과 활동들을 생각해 봐도 됩니다.

라울프 : 그렇다면, 이것은 당신의 작업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?

아감벤 :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, “호모 사케르” 기획은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마지막이자 체계는 가장 흥미로운 책은 역사적 논의에 할애되지 않을 것입니다. 저는 삶의 형식들^{Lebensformen}과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개념에 관해 생각하고 싶습니다. 제가 삶의 형식이라고 부르는 것은, 관련된 형식으로부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삶, 별거벗은 삶과 같은 것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삶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‘프라이버시’^{사적}26)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기능합니다.

라울프 :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분명히 푸코와 다시 연결되는군요. 어쩌면 말년에 “함께 살기 *Vivre ensemble*”라는 논제에 관해 강의를 했던 롤랑 바르트와도 연결되구요.²⁷⁾

아감벤 : 바로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푸코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리스와 로마로 역사적으로 퇴행해 버렸습니다. 이러한 논제에 관해 생각할 때, 당신은 당신 발아래에 더 이상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즉각 알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, 푸코의 이른바 고고학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면,²⁸⁾ 현재로의, 그리고 직접적인 것으로의 어떠한 접근방법도 갖고 있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될 것입니다. 하지만 고고학이 할 수 있는 것은, 고고학의 대상이 삶의 형식인 이상, 바뀔

26) * 여기에서 말하는 ‘프라이버시’는 타자의 동반이나 관찰, 또는 감시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며, 나아가 은거나 은둔의 장을 함의한다.

27) * Roland Barthes, *Comment vivre ensemble: cours et séminaires au Collège de France, 1976-1977*, Seuil/IMEX, 2002.

28) 예를 들어 Michel Foucault, *L'Archéologie du savoir*, Gallimard, 1969; *Archeology of Knowledge* (Pantheon 1982)을 보라.

말하면, 그것이 직접적인 삶의 경험인 이상, 간단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.

라울프 :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, 거의 모든 철학자는 선이나 올바름이라는 비전, 또는 철학적 삶의 비전과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. 당신의 경우 그것은 무엇입니까?

아감벤 :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든다는 관념은, 오늘날에 관해서 말하자면, 대개 푸코에게, 그리고 자기에의 배려라는 그의 관념에 귀속됩니다.²⁹⁾ 위대한 고대사가^{古代史家}인 피에르 아도^{Pierre Hadot}는 고대 철학자들에게 자기에의 배려란 삶을 예술작품으로 구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,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일종의 자기 상실^{dispossession}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푸코를 논박했습니다.³⁰⁾ 아도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, 푸코에게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일치한다는 점입니다. 당신은 저자 개념에 대한 푸코의 비판을 기억해야만 하며, 저자성^{authorship}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해체를 기억해야만 합니다.³¹⁾ 이런 의미에서 철학적 삶, 좋고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입니다. 즉 당신의 삶이 한 폭의 예술작품으로 될 때, 당신은 그것의 원인이 아닙니다. 제가 말하는 것은, 당신이 자기 자신의 삶이나 자기 자신을 ‘고안된’ 어떤 것^{etwas Gedichtes}으로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, 그러나 주체는, 즉 저자는 더 이상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. 삶의 구축은 푸코가 ‘자기의 단념^{se deprendre de soi}’으로 언급한 것과 일치합니다.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저자 없는 예술작품이라는 니체의 관념이기도 합니다.

라울프 : 과거 30여 년에 걸쳐 정치의 비-배타적인 형식^{nicht-exklusive Form}을 주조해 내려고 시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니체는 결정적인 참조점이었습니다. 당신에게는 왜 그렇지 않는 거죠?

아감벤 : 무슨 말을 하는 건지요! 제게도 니체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, 영원회귀란 구류라는 죄, 학교에서 같은 문장을 수천 번 반복하여 필사하라고 통고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벤야민에게 아주 강한 공감을 느낍니다.

라울프 : 하지만 몬티나리^{Montinari} 전후의 이탈리아에서의 문헌학은, 니체가,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정도만큼 강력한 저자가 아니라, 오히려 독해와 관념 — 방금 전에 당신이 불렀듯이 저자 없는 예술작품 — 에 관한 열려 있고 횡단되며 교차되는 저자라는 점을 엄밀하게 증명했습니다.

아감벤 :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주체의 현전을 잇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겠죠. 우리는 저자로부터 작품을 지켜야만 합니다.

29) * Michel Foucault, *Le Souci de soi*, Gallimard, 1984.

30) 예를 들어 Pierre Hadot, *What is Ancient Philosophy* (Michael Chase trans., Belknap 2004); *Philosophy as a Way of Life: Spiritual Exercises from Socrates to Foucault* (Pierre Hadot and Arnold Davidson eds., Michael Chase trans., Blackwell 1995)을 보라.

31) * Michel Foucault, “Qu’est-ce qu’un auteur?”, *Bulletin de la Société française de Philosophie*, 63, no. 3, 1969.[장진영 옮김, 「저자란 무엇인가?」, 김현 편, 『미셸 푸코의 문학비평』, 문학과지성사, 1989년, 238~275쪽.]